# 서울특별시 강사규 지역이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서

2012. 10. 19.

복지 · 건설위원장

### 1. 심사경과

가. **발의일자** : 2012. 8. 31. / 신창욱 의원 외 13명

나. 회부일자 : 2012. 9. 5.

다. 보류일자 : 제20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

복지·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심사결과 보류(2012.9.18.)

라. 상정일자 : 제20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

복지·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12.10.19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신 창 욱 의원)

#### □ 제안이유

우리 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, 학습능력 제고, 일상생활지도,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# □ 주요내용

가.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. (안 제3조)

- 나. 「아동복지법」시행규칙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가 신고에 의하여 지역 아동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아동을 정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장이 수행하는 사업 및 책무를 규정함(안제5조, 안 제6조)
- 라.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사자 인건비, 복리후생비, 시설 운영비, 아동급식비,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7조)
- 마.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)
- 바. 이 조례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규정함(안 부칙 제2조)

#### □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『아동복지법』제4조

나. 예산조치 : 2013년도 예산반영 필요

다. 기 타

## 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: 임석진)

- 본 조례안은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와 제52조 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,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·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안 제4조는 사회복지법인, 종교법인 등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이 법령에 따라 신고한 시설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, 이는 「아동복지법」시행규칙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가 신고에 의하여 지역 아동센터를 설치・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봄.
- 안 제5조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지역아동센터가 수행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며 지역아동

센터 장에게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 아동보호에 관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한 바,

- 이는 보건복지부의 "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"에서 지역사회 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미만 아동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 대상아동을 규정하고 지자체 및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빈곤·학대·방임·한부모 가정·조손가정·소년소녀 가정·이혼 가정·결혼이민자 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 등을 적극 발굴·보호하여 아동 방임을 예방하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부 "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"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한 바와 같이 조례안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봄.
- 안 제7조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 사자인건비, 운영비, 아동급식비,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,
- 이는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비 등이 국·시비 지원에 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구비 지원 근거가 없어 조례로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봄.
-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자격,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#### 4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규정한 지방자치 단체장의 책무를 구현하고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자 입안한 것으로, 조례안 구성 및 내용도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타당 하다고 사료됨. 다만,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음.
- 5. 기 타 : 「지방자치법」제132조에 따라 구청장 의견청취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